



법무

## EU 신(新)통상규범 연구: 역외보조금 규제·통상위협 대응조치를 중심으로

권소담<sup>1)</sup>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변호사  
(sodam.kweon@bkl.co.kr)

강혜인<sup>2)</sup>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연구원  
(hikang@bkl.co.kr)

이정민<sup>3)</sup>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연구원  
(jmlee@bkl.co.kr)

다자무역체제의 무력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전례 없는 팬데믹 등과 같이 혼란스러운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속에서 국제정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세계 각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신(新)통상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통상전략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차단하고 역외에서 유입되는 보조금으로부터 자국의 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과, 제3국의 강압적인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위협대응조치 법안이 발의되었다. 두 가지 규제 모두 표면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바, 법안의 주요 내용과 통상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EU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통상규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해 본다.

**핵심용어** 유럽연합, 신통상규범, 역외보조금, 통상위협대응조치, 세계무역기구

<b>목차</b>	I. 서론
	II. EU 역외보조금 규제
	1. 주요내용
	2. 향후 예상 법안 처리 일정
	3.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 분석
	4.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III. EU 통상위협대응조치
	1. 주요내용
	2. 향후 예상 법안 처리 일정
	3.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 분석
	4.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IV. 결론 및 시사점

1)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변호사

2)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연구원

3)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연구원

## I. 서론

다자무역체제의 무력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전례 없는 팬데믹에 더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현재 전 세계는 급격한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유례 없는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국가경제와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2월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Union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는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 방안으로 중장기 계획인 신(新)통상전략을 발표하였다. 신(新)통상전략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EU 회원국의 이익과 안보 보호를 중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개혁,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디지털 전환, EU 규제의 영향력 강화, 무역대상국 확대 및 공정경쟁 등 총 여섯 가지 통상 전략<sup>4)</sup> 중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배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정경쟁을 도모할 것을 선포하였다.

EU가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내세운 첫 번째 카드는 역외보조금 규제(foreign subsidies regulation)로, 이는 EU 역내시장에서 제3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보조

금으로 인한 경쟁왜곡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다. EU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려는 제3국의 강압적인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두 번째 카드는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이하 “ACI”) 법안이다. EU는 그간 반덤핑, 상계관세 등 역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다양한 대응조치를 마련해왔으나 역외보조금, 경제적 압력 등과 같이 암묵적으로 확산되어 왔던 불공정 무역 관행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조치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sup>5)</sup>

두 법안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재 대상 조치를 취한 모든 역외 기업 또는 국가에 동 법안들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 및 기업도 이를 좌시할 수만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EU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 ACI 법안 등 두 법안의 주요 내용, 향후 예상되는 법안의 처리 일정을 소개함으로써 EU 신통상규범의 현 주소를 상세히 살펴보는 동시에,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통상규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해 본다.

4) European Commission, “Trade Policy Review – 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 EC COM(2021) 66 final, 2021.

5) Eszter BALÁZS, “New tool to protect internal market against distortive foreign subsidies,” 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s, 2022;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Report,” European Commission SWD(2021) 371 final, 2021, p. 8.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1/december/tradoc\\_159963.pdf](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1/december/tradoc_159963.pdf) 참조.)

## II. EU 역외보조금 규제

### 1. 주요내용

#### 1) 발의 배경

2020. 6. 17. EU 집행위는 EU 역내시장에서의 경쟁왜곡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역외보조금 관련 EU 역내시장 내 경쟁조건 공정화에 관한 백서'<sup>6)</sup>를 발표하였다. 동 백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EU 내부시장에 역외보조금이 상당한 수준의 경쟁왜곡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나 EU 내부시장 내 경쟁이 불균형한 상황이며, 제3국에서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반면 역외보조금으로 인해 EU 기업 인수가 촉진되고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 법안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역외보조금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사업(Belt and Road Initiative, 이하 "BRI")의 추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sup>7)</sup> 동 사업은 중국 및

유라시아 주요 지역에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여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중국(국유)기업이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제공받아 직접 해외개발투자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 하에 중국(국유)기업이 낙찰을 받고, 진행 과정에서 중국 기업과 인력이 동원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금이 다시 중국으로 회수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의 BRI 사업은 중국의 '거대통합경제권 형성'과 '지역패권주의 강화'라는 국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자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sup>8)</sup> 그러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 EU 역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만들었다.<sup>9)</sup>

그로 인해 EU는 외국의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으로부터 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EU는 2017년부터 미국 및 일본과 공동으로 산업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3자회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고, 2020. 1. 14. 제6차 미·EU·일 공동성명에서 산업보조금에 대한 WTO 규정 강화

6) White Paper on levelling the playing field as regards foreign subsidies. 2020. 6. 17. COM(2020) 253 final.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system/files/2021-06/foreign\\_subsidies\\_white\\_paper\\_en.pdf](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system/files/2021-06/foreign_subsidies_white_paper_en.pdf) 참조.)

7) 정누리, "제3국 우회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동향에 관한 소고: 2021년 발의된 유럽연합과 미국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2021), pp. 219-248; 오세화, "PIIE 세미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 「워싱턴통상정보」, 2021. 10. 22. 중국의 BRI 사업에 대한 기사는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8730108> 참조. 2013년부터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 아래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이 과정에서 중국이 연선(沿線)에 위치한 개도국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에 자국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한 해외개발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역외보조금 문제의 시초가 되었다. 즉, 중국의 해외개발투자는 중국의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여 중국의 국유기업이 사업을 독점적으로 낙찰을 받고, 그 실행과정에 중국의 기업과 인력이 주로 동원되어,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참가국에 지원한 자금 또는 제공한 차관은 궁극적으로 중국계 기업에게 유입되며 되어 중국이 역외 소재의 중국계 기업에게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8) 최재덕, "일대일로의 이론과 실제: 중국의 지역패권주의 강화와 일대일로 사업추진에서 발생한 한계점",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3호(2018), pp. 25-46; 최재덕, "중국몽(中國夢) '일대일로', 그 기회와 함정", 프레시안, 2018. 7. 27; 최재덕, "중국의 미래전략이 바뀐다 - [기고] 코로나 팬데믹 속 중국의 대응", 프레시안, 2020. 12. 14.

9) 정누리, 전개논문, pp. 219-248.

를 목표로 WTO 보조금협정 개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sup>10)</sup> 2019년 EU 집행위는 ‘중국 전략 보고서(EU-China Strategic Outlook)’를 통해 국영기업과 역외보조금의 시장 왜곡 효과를 규제에 있어 EU법상 ‘규제 공백(regulatory gap)’이 있으며,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sup>11)</sup> 또한, 국경을 초월하여 유입되는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이집트 및 인도네시아 기업이 제3국 정부(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자금을 수혜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EU에 수출한 이집트산 유리섬유 제품과<sup>12)</sup>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에<sup>13)</sup> 대해 각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현 WTO 체제에서는 역외로부터 우회되어

유입되는 보조금에 대한 규제 조항이 미비한 점,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분쟁 해결이 어려운 점, 그리고 EU 내 중국의 투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현행 EU 보조금 규정(State Aid rules) 및 다자무역규제 조치만을 통해서 EU 단일시장 내 경쟁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러한 규제 공백을 메꾸고 역내 시장 경쟁 왜곡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을 발의하였다. 결과적으로 동 규제 법안이 주로 중국의 BRI 사업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발의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sup>14)</sup> 중국만을 겨냥한 법안이 아닌 EU 내로 유입되는 모든 제3국의 재정적 지원, 즉 역외보조금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10)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 통상장관회의 공동서명(Washington D.C., 2020. 1. 14); 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0/january/tradoc\\_158567.pdf](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0/january/tradoc_158567.pdf) 참조);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은 현행 WTO 협정이 일부 국가의 왜곡된 시장/무역보조금을 규제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산업보조금에 대한 다자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일부 국가(certain jurisdiction)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천기·강민지,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0권 제6호(2020).

11)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and HR/VP contribution to the European Council: EU-China - A strategic outlook,” 2019. 3. 12.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communication-eu-china-a-strategic-outlook.pdf> 참조).

12)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776 of 12 June 2020 imposing definitive countervail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woven and/or stitched glass fibre fabric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Egypt and amending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492 imposing definitive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woven and/or stitched glass fibre fabric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Egypt.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toc=OJ%3A2020%3A189%3ATOC&uri=uriserv%3AOJ.L.\\_2020.189.01.0001.01.ENG](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toc=OJ%3A2020%3A189%3ATOC&uri=uriserv%3AOJ.L._2020.189.01.0001.01.ENG) 참조.) 해당 이집트의 유리섬유 기업은 중국의 BRI 사업과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개발 계획이 공동으로 진행되는 SETC-Zone 내 기업으로, 이집트는 SETC-Zone 내 중국 기업에게 토지, 노동, 세금 우대 조치 혜택을 부여하였고, 중국과 재정적인 지원 협력 협정을 맺은 바 있다. EU는 중국 정부가 SETC-Zone에 속한 기업에게 재정적 지원을 한 것을 이집트 정부를 통해 지원된 초(超)국경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단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김경화, “EU,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본격화”, 「통상이슈브리프」, No.2(2022).

1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433 of 15 March 2022 imposing definitive countervailing duties on imports of 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originating in India and Indonesia and amending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2012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definitively collecting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originating in India and Indonesia.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2.088.01.0024.01.ENG&toc=OJ%3A2022%3A088%3ATOC](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2.088.01.0024.01.ENG&toc=OJ%3A2022%3A088%3ATOC) 참조.)

14) 정누리, 전계논문, pp. 219-248.



## 2) 역외보조금의 정의

2021. 5. 5. EU 집행위는 ‘역내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에 관한 규정 입법안’을<sup>15)</sup> 영향평가 보고서와<sup>16)</sup> 함께 발표하였고 이후, 동 법안은 EU 의회 내 국제통상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이하 “INTA”)의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정교화 되었다. 2022. 7. 11. 발표된 EU 의회·이사회의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의 잠정합의안(Provisional Agreement)에 따르면,<sup>17)</sup> ‘역외보조금’이란 ① 제3국의 정부, 공적기관 또는 제3국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는 행위를 한 민간단체의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② EU 역내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EU 내 설립 법인이 아니어도 무관)에게로 부여되고, ③ 그러한 재정적 기여로 인한 혜택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개별 사업이나 산업 또는 여러 사업이나 산업으로 제한되는 경우(즉 이른바 ‘특정성(specificity)’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sup>18)</sup> 그리고 이러한 역외보

조금이 EU 내에서 경쟁을 왜곡한다면 최종적으로 규제 대상인 역외보조금으로 판단된다.<sup>19)</sup>

법안의 적용 대상은 ① 일정 매출액 이상의 EU 내 기업과 기업결합(concentration)이 일어나는 경우, ② EU 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 중 입찰액 규모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 또는 ③ 기타 ①과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EU 역내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상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①과 ②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외국 정부로부터 수혜 받은 보조금 내역을 반드시 신고하고, EU 집행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sup>20)</sup> 그러나 3년 간 4백만 유로 미만의 보조금과 자연재해 또는 예외적인 발생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범위 내의 보조금에 의해서는 시장왜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sup>21)</sup> 다만, ①과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에 따른 EU 역내시장의 경쟁 왜곡이 의심되는 경우, EU 집행위는 직권 조사(ex officio)를 개시할 수 있다.

15)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2021. 5. 5. COM(2021) 223 final, 2021/0114 (COD).

16)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IMPACT ASSESSMENT, Accompanying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2021. 5. 5. SWD(2021) 99 final.

17) European Parliament. Provisional Agreement Resulting from Interinstitutional Negotiations. 2020. 7. 11. ([https://www.europarl.europa.eu/meetdocs/2014\\_2019/plmrep/COMMITTEES/INTA/DV/2022/07-13/1260231\\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meetdocs/2014_2019/plmrep/COMMITTEES/INTA/DV/2022/07-13/1260231_EN.pdf) 참조.)

18)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1-2

19)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3

20)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18

21)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3(2)

### 3) 제재 분야

#### (1) 기업결합(Concentration)<sup>22)</sup>

동 법안의 첫 번째 규제 유형은 역외보조금이 EU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추진할 때 발생하는 시장 왜곡에 대한 규제이다. 즉, ① 피인수기업 또는 기업결합 대상기업 중 일방의 EU 내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고, ② 제3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규모가 최근 3년간 5천만 유로 이상일 경우 규제 요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기 두 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EU 집행위에 사전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기업결합 이행이 금지된다.

EU 집행위는 기업으로부터 사전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5 영업일 이내에 인수·합병 건을 검토하며, 심층 조사 개시 후 90 영업일 이내에 규제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해당 당사자가 EU 내부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위 기간은 15 영업일 연장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기업결합 이행이 금지된다.<sup>23)</sup> 고의·과실 등으로 인해 부정확·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과 같이 비협조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답변은 EU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sup>24)</sup> 미신고, 심사기간 중 기업결합 이행, 금지결정 불이행 등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sup>25)</sup>

#### (2) 공공조달<sup>26)</sup>

두 번째 규제 유형인 공공조달은 사업자가 관련 재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유리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보조금이 지급되어 이로 인한 시장 왜곡이 있는 경우이다. 즉 ① 특정 기업의 EU 내 공공조달(예상)가액이 2억 5천만 유로 이상이며, ② 그 기업(외국기업 및 협력업체)이 최근 3년간 400만 유로 이상의 역외보조금을 받은 경우 규제 요건에 해당된다.<sup>27)</sup> 따라서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반드시 EU 집행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사전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 예비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기한을 1회에 한해 10 영업일 연장할 수 있고, 해당 기한 내에 심층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sup>28)</sup> 그러나, 제출된 서류가 불완전하다고 의심되거나 EU 집행위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경우, EU 집행위는 심층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새롭게 입수한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예비검토를 이행할 수 있다.<sup>29)</sup> 심층조사의 경우, 110 영업일 이내 역외 보조금 수령 여부 등을 검토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 또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해

22)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17-25

23)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23-24.

24)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14-15

25)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25

26)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26-32

27)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27

28)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29(2)

29)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Art. 29(3a)

심층조사 기간을 20 영업일 연장할 수 있다.<sup>30)</sup> 예비 및 심층조사 기한 동안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공공조달 절차는 이행될 수 있으며, 공공조달의 경우에도 미신고를 포함한 불완전한 정보 제공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sup>31)</sup>

### (3) 기타

상기 두 유형의 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수준의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입찰이 있거나, 기타 역외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관하여도 EU 집행위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3년간 4백만 유로 미만의 보조금은 경쟁 왜곡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sup>32)</sup> ① 부실 사업에 부여된 보조금(구조조정 계획, 자구노력 없는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 ② 무제한적 채무 보증(OECD 협정에 위반되는 수출 금융 조치 포함), ③ 기업결합 직접 지원 보조금, ④ 공공조달에서 부당한 저가 입찰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금은 3년간 4백만 유로 미만이라 하더라도 경쟁왜곡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여 역외보조금 직권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sup>33)</sup>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행위는 역외보조금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권으로 정보를 요청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sup>34)</sup>

## 2. 그간의 경과 및 향후 예상 법안 처리 일정

2020. 6. 17. EU 집행위의 백서 발표 이후 약 2주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제화가 추진되었다.<sup>35)</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1. 5. 5. EU 집행위는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에 관한 규정 입법안’을<sup>36)</sup> 영향평가 보고서와<sup>37)</sup> 함께 발표하였고 이후, 동 법안은 EU 의회 내 국제통상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이하 “INTA”)의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정교화되었다. 일례로, 경쟁왜곡 보조금 하한선을 기존의 500만 유로에서 400만 유로로 축소하거나, 역외보조금을 제공하는 제3국이 정부의 부당한 시장개입 또는 불공정 경쟁을 통제할 수 있는 보조금 심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등 규정안에 대한 조항 수정 및 추가가 이루어졌으며, EU 집행위가 개별 기업들로 하여금 역외보조금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하는 등 규제 도입에 앞서 세부적인 수정이 이어져 왔다.

지난 2022. 5월 EU 의회에서 진행된 수정안 투표에 따르면, 찬성 627표, 반대 8표, 기권 11

30)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Art. 29(4)

31)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31-32

32)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3(2)

33)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4(1)

34)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Art. 35: EU 집행위는 10년 이내 수령한 역외보조금 중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 수령한 역외보조금까지 직권 조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35) 전반적인 진행 타임라인은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international/foreign-subsidies\\_en](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international/foreign-subsidies_en) 참조.

36)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2021. 5. 5. COM(2021) 223 final, 2021/0114 (COD).

37)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IMPACT ASSESSMENT Accompanying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2021. 5. 5. SWD(2021) 99 final.

표1 EU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 내 유형별 조치

	유형 1 M&A	유형 2 공공조달	유형 3 기타
<b>범위</b>	- 역외보조금이 EU기업의 인수, 합병 또는 합작투자를 촉진할 때 발생하는 시장왜곡	- 사업자가 관련 재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유리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왜곡	- 신고 요건 미만의 (1)기업결합, (2)공공조달 - 기타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상황
<b>요건</b>	- 피인수기업 또는 기업결합 당사기업 중 일방의 EU 내 매출액 5억 유로 이상 - 제3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규모 최근 3년간 5천만 유로 이상	- 공공조달 가액이 2억 5천만 유로 이상 - 최근 3년간 400만 유로 이상 보조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우	- 3년간 4백만 유로 미만의 보조금은 경쟁 왜곡 가능성 낮음 - 단, 다음 유형의 보조금은 경쟁왜곡 효과가 큼 ① 구조조정 계획, 자구노력 없는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 ② 무제한적 채무 보증 ③ 기업결합 직접 지원 보조금 ④ 공공조달에서 부당한 저가 입찰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금
<b>신고</b>	-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전신고 - 심사기간 동안 기업결합 이행이 금지되며, 예비조사(25 영업일) 후 경쟁왜곡이 의심될 경우 심층조사(90영업일) - 미신고, 심사기간 중 기업결합 이행, 금지결정 불이행 시 과징금	-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전신고 - 심사기간 동안 계약체결 금지(그 외 이행 절차는 가능) - 예비조사(20영업일+10 영업일) 후 필요 시 심층조사(110 영업일+20 영업일) - 미신고시 과징금	- 직권조사: 예비조사 후 경쟁왜곡이 의심되면 심층조사
<b>시정 조치</b>	- 행동조치: 시장참여 감축, 특정 시장 활동 금지 등 - 구조적 조치: 인수합병 금지 또는 철회	- 조건부 계약; 또는 - 시정방안이 불충분한 경우, 계약체결 금지	- 피조사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하거나, 집행위가 제재 부과(보조금 반환, 투자제한, 자산매각 등)

자료: 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Provisional Agreement (Provisional Agreement)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로, EU 의회는 EU 집행위가 역외보조금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채택된 수정안을 바탕으로 2022. 5. 5.부터 최종 규제 형태에 대해 EU 이사회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022. 6. 30. 이사회와 합의에 도달하였다. 합의된 동 규정은 이후 공식 입법 절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2022. 10월 중 EU 의회 본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 법안이 이사회와 의회에서 공식 채택되는 경우, EU 관보에 게재된 이후 20일째 되는 날 발효되며, 발효 6개월 후 EU 전역에 직접 적용될 예정이다.

### 3.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 분석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은 기존의 WTO 규범 또는 EU 역내 규범이 역외보조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못 하는 규제 공백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EU가 일방적으로 역내 규정에 근거하여 취하는 조치의 근거가 될 것이다. EU 집행위는 동 법안에도 불구하고 EU의 국제의무에 위반되는 조치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으나, 실제 국제 무역협정상의 보조금 관련 의무와 EU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8)</sup>

현 시점에서 EU의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은 WTO 보조금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이하 “GATS”)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우려가 있다.

먼저 WTO 보조금협정 상 규제할 수 있는 보조금은 관할 대상 ‘상품’에 대한 ‘역내보조금’으로, 정부(영토 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수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특정성을 충족하는 경우로 정의된다.<sup>39)</sup> WTO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정의 규정(제 1.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국가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조금 공여국 영토 외에 위치한 국가에 대해 재정적 기여가 제공되는 경우도 제1.1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제2.1조의 ‘공여당국의 관할 내에 있는’ 경우도 물리적인 영토의 개념을 뜻하는 것이 아닌 관할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적에 기초한 관할권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sup>40)</sup> 무엇보다, WTO 보조금협정은 “1994년도 GATT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한바,<sup>41)</sup>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에 대해 협정에 따른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법안 시행이

38) 이천기·강민지·김민주,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환율보조금”,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1-05(2021), pp. 27-75.

39)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 1

40) 이천기 외, 전제 보고서, pp. 27-75; 역외로 유입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Panel Report, Brazil - Aircraft (DS46) 사건 참조. 해당 사건에서 브라질은 자국 정부의 수출금융제도(PROEX Financing)를 통해 브라질 항공기 제작사의 항공기를 구매하려는 해외에 위치한 항공기 구매업체에 자금을 브라질 상업은행이 설정한 이자율을 브라질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통해 지불하여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도록 한 사례로, ‘자금의 직접 이전’으로서 보조금의 정의에 충족되어 수출보조금으로서 WTO 보조금협정 제3조 위반이라고 판시된 사례임.

41)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 32.1

후 WTO 분쟁해결기구의 구체적인 판사가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다만, 전반적으로 동 법안은 역외보조금 시정조치의 채택여부를 당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법안 그 자체가(as such)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채택된 시정조치가(as applied)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안 시행 이후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EU의 역외보조금 규제는 현행 규범 체제의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일례로, GATS 협정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해서 적용되며,<sup>42)</sup>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의무를 명시하였다.<sup>43)</sup> 동 규정 제2.1조에서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동종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간에 차별을 두지 않을 것(즉 최혜국대우)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 국가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해당 국가 중앙정부의 역외보조금 수혜 혜택을 이유로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동종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 사이의 경쟁조건을 부정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또한 동 규정 제17.1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다른 회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즉 내국민대우). 여기서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기존의 EU 내

기업간의 결합에는 요구되지 않는 추가 규제에 해당하므로 사실상(de facto)의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 EU의 입장에서는 해당 협정의 제14.3조(일반적 예외)에 따라 역외보조금 규제가 다른 회원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 4.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EU의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은 당초 중국의 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것이기는 하나, EU 역내 시장에 왜곡을 발생시키는 모든 보조금이 규율 대상인 만큼, 적용 대상이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EU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 특히 EU 내에서 기업결합을 계획하거나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경우, 향후 역외보조금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즉 우리 정부기관 및 국책은행으로부터의 보조금(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기여) 수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향후 EU 집행위가 발간할 역외보조금 평가 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고 대상 여부 및 심사 진행 절차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사전에 집행위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증빙 서류를 확보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2) WTO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rt. 1; 여기서 회원국의 조치(measure)는 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여부와 상관없이 회원국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를 의미함.

43) WTO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rt. 2.1, 17.1

### III. EU 통상위협대응조치

#### 1. 주요 내용

##### 1) 발의 배경

2021. 12. 8. EU 집행위는 제3국이 EU 또는 EU 회원국에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서 ACI 규정 초안을 발표하였다.<sup>44)</sup> 동 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對)EU 경제적 압력(economic coercion) 문제에 대한 EU 차원 대응의 일환으로, EU 및 EU 회원국의 이익과 주권적 선택(sovareign choices)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sup>45)</sup>

특히, ACI는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 회원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제3국의 경제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일례로 2019. 7.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채택하자 미국 정부는 프랑스산 63개 품목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경고한 바 있고,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하기도 하였다.<sup>46)</sup>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9년 EU가 열대우림 훼손을 이유로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팜오일 퇴출 정책을 도입하자 유럽산 유제품 및 증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하였으며, 중국은 EU가 신장 위구르

족 인권 문제로 제재하자 독일 자동차, 프랑스 와인 등 EU 역내 주요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언급하며 등을 압박한 바 있다.<sup>4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EU는 외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고, 2019. 12. 11.을 기점으로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됨에 따라 WTO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구속력이 약화되자, 특정 제도 없이 외교 수단에만 의존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제3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동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무엇보다 EU가 제3국의 경제적 압력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제파트너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sup>48)</sup>

앞서 살펴 본 역외보조금 규제와 마찬가지로 ACI 역시 명시적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는 않으며 EU를 대상으로 경제적 압력 조치를 취하는 모든 제3국에 적용될 수 있어, 우리 기업 또는 정부 또한 간접적인 영향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동 규정에 따른 조치의 요건 및 제재 분야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 2) Coercion의 정의

ACI 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압력(economic coercion)'이란 "① 제3국이 EU

44)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45)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Report," European Commission SWD(2021) 371 final, 2021, pp. 12-14.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1/december/tradoc\\_159963.pdf](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1/december/tradoc_159963.pdf) 참조.)

46) 김도연, "EU, 역외국 통상위협 대응 규정안 마련,"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

47) Ibid.

48)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Commission proposal for an Anti-Coercion Instrument," European Commission Press Corner, 2021.

의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② EU 및 회원국의 정책 결정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다.<sup>49)</sup> EU는 이러한 경제적 압력이 EU와 회원국들의 합법적인 정책 결정을 부당하게 방해하며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 회원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역외국 정부를 억제하기 위해 무역, 투자 또는 기타 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sup>50)</sup>

제3국의 행위가 경제적 압력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되며, ① EU의 정책 또는 사업의 수행에 있어 차별적인 수입 관세 부과 조치, ② 사업 수행에 필요한 승인의 의도적인 지연 또는 거부, ③ 특정 EU회원국의 상품에 대한 차별적 식품 안전 검사, ④ 그 외 특정 EU회원국 상품에 대한 국가주도의 불매 운동(boycott) 등의 비관세조치 등도 경제적 ‘압력’에 포함될 수 있어 그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다.

### 3) 대응 가능한 조치의 요건 및 제재 분야

ACI는 EU가 취할 조치를 2단계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EU 집행위가 제3국의 경제적 압력을 분석하여, 그 압력의 유무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후, 경제적 압력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제3국과 협의한다. 제3국과의 협의를 통한 경제적 압력이 중단되지 않

을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가 EU 자체의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압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① 제3국 조치의 강도, 심각성, 빈도, 지속기간, 범위 및 규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의 정도; ② 제3국이 EU 또는 EU회원국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패턴(pattern of interference)이 존재하는지 여부; ③ EU 또는 EU회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정도; ④ 제3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우려(legitimate concern)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⑤ 제3국이 압력 조치를 시행하기 이전에 양자 간 또는 국제포럼에서 국제협력 또는 조정을 통해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는지 여부가 이에 포함된다.<sup>51)</sup>

경제적 압력에 대한 EU의 대응 가능한 조치(Anti-coercion)의 요건은 상당히 포괄적인데, ① EU가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에 대하여 그 제3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EU 또는 회원국에 가한 경제적 압력 중단과 손해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② 특정 EU 및 EU 회원국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EU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도입될 수 있다.<sup>52)</sup>

제재 분야는 상품, 서비스, 투자뿐 아니라 지식재산권<sup>53)</sup> 및 외국인직접투자 분야까지 포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제품의 경우 관세부과조치 및 비관세조치(쿼터, 수출입제한 등)

49)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European Commission COM(2021) 775 final, 2021. Art. 2(1)

50)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Commission proposal for an Anti-Coercion Instrument,” 2021.

51) ACI Proposal Art. 2(2)

52) ACI Proposal Art. 7

53) 한편, 지식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과 관련하여, “nationals”라는 용어는 WTO 지식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제1조 제3항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ANNEX II Art. 4.

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금융서비스, 공공조달 입찰, EU의 화학물질 등록제도 및 위생검역 규정의 등록 및 허가, EU 펀딩(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sup>54)</sup> 특히, EU가 최근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기후변화, 조세(taxation) 또는 식품안전(food safety) 분야에 위협을 가할 경우 대응조치를 부과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sup>55)</sup> EU의 신통상정책을 겨냥하는 경제적 압력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ACI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EU를 대상으로 경제적 압력 조치를 취하는 모든 제3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치의 잠재적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 도입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교역 대상국을 포함하여 관련 특정 단체 또는 개인도 제재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기업이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4) ACI 조치 조사 및 제재 부과 절차

EU 집행위가 조사를 통해 위협이 존재한다

고 판단되면,<sup>56)</sup> 먼저 상대국과의 직접 협상, 조정, 국제중재 등의 형태로 원만한 합의를 모색한다.<sup>57)</sup> 이때, EU 집행위는 국제기구 및 국제포럼에서 동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유사한 경제적 위협의 피해를 받고 있는 다른 국가와 협력을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지속되는 경우 EU 집행위는 해당 국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58)</sup> 다만, 역외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제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협상, 경고, 실행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EU 자체의 대응 조치를 법률로 채택하여 시행하며, 원칙적으로 EU 집행위는 대응조치를 법률로 채택하기 전에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로<sup>59)</sup>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단, 경제적 위협으로 인해 EU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승인을 받기 전에 대응조치를 즉시 도입할 수 있고 최대 3개월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sup>60)</sup> 대응조치는 경제적 압력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정확한 대상과 기간을 설정하

54) ANNEXES to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ANNEX I.

55) European Commission, "EU strengthens protection against economic coercion,"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202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6642](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6642) 참조.)

56) ACI Proposal Art. 3-4

57) ACI Proposal Art. 5-6

58)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Commission proposal for an Anti-Coercion Instrument," 2021.

59) 회원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투표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표결방식으로 회원국 55%(15개국) 및 전체 인구의 65% 이상 찬성 시 법안이 통과된다. 최세나, "유럽연합의 신통상정책 공정무역인가? 보호무역인가?", EU 깊이 있게 알기 시리즈(15), p. 6.

60) 한편, 독일 등 11개국과 EU 이사회 법률자문기구는 제3국에 대한 제재조치가 통상 이외 EU의 외교 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며, 따라서 제3국의 통상위협에 대한 보복조치 등 대응조치 발동 권한은 집행위가 아닌 EU 이사회가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리셀지부, "유럽의회 국제통상위, '통상위협 대응조치' 합의...이사회는 합의 난항", (2022), <https://www.kita.net/cmmrcInfo/cmerInfo/areaAcctoCmerInfo/euCmerInfo/euCmerInfoDetail.do?pageIndex=1&nIndex=1826448&no=1826439&classification=130001&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Keyword=> 참조(2022. 9. 13. 검색)

여 부과되어야 한다.<sup>61)</sup>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위 산하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재 방안을 채택하고, 시행 데드라인을 설정한다. 전술하였듯이, 제3국의 상품,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공공조달, 금융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대응 조치가 채택될 수 있으며, 향후 추가 법률 개정을 통해 대응 조치를 확대할 수도 있다. 이후 EU 집행위는 조치의 적용시점을 상대국에 통보 후, 일정에 맞춰 제재를 시행한다. 한편, 제재 부과 후 또는 제재 시행일 이전에 해당 국가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EU의 제재조치 또한 중단된다.<sup>62)</sup> EU 집행위는 규정에 대한 이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제재조치를 개정(amendment)<sup>63)</sup>, 유예(suspension)<sup>64)</sup> 또는 종료(termination)<sup>65)</sup> 할 수 있다. EU 제재조치를 채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정, 유예 또는 종료 전에 가중다수결을 통해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up>66)</sup>

## 2. 향후 예상 법안 처리 일정

2022. 4. 19. EU 의회 INTA 위원장 베른트 랑게는 EU 의회 입장을 담은 ACI 검토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22. 9. 6. INTA는 ACI를 승인하기로 합의하였다.<sup>67)</sup> 반면, 같은 날 진행된 EU 이사회의 법안 협의에서는 조치 발동 권한 등에 대하여 독일 및 스웨덴을 포함한 11개 회원국이<sup>68)</sup> 우려를 표명하면서, 제3국에 대한 제재 조치가 통상 이외의 외교 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보복조치 등 발동의 권한은 EU 집행위가 아닌 EU 이사회가 보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즉 각 EU 회원국이 좀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CI에 따른 조치가 WTO 규범과 합치되지 않을 경우 다자간 규칙 질서가 훼손될 수 있으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EU의 보복조치는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적 압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

61)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Commission proposal for an Anti-Coercion Instrument," 2021. EU 집행위는 EU의 대응조치를 채택할 때, 상기 제2조의 기준과 함께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① 경제적 위협의 중단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 ② EU 경제주체에게 적합한지 여부, ③ EU 경제주체 및 기타 EU 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지 여부, ④ 경제적 위협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에서 채택한 대응 조치, ⑤ 국제법 준수 여부

62) 김도연, (2021). 다만, 대응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항상 제3국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

63) 상황의 추이와 제3국의 대응을 바탕으로 대응조치를 개정. 요컨대, 정부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들이 일반적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한다면 이를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64) ① 제3국이 경제적 위협을 유예하고, ② 유예가 EU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제3국과 EU가 해당 문제를 구속력 있는 국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제3국이 경제적 위협을 유예할 경우

65) ① 경제적 위협이 중단된 경우, ② 상호 해결책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③ 구속력 있는 국제 분쟁해결 판정이 EU 제재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④ EU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6) 단,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회원국 승인 없이 즉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효과는 최대 2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67) INTA는 정파간 합의를 통해 집행위 법안을 승인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오는 10. 10. 표결 승인할 예정이며, 1주일 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022).

68)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의를 요구함에 따라 향후 이사회 법안 승인에 난항이 예상된다.<sup>69)</sup> 다만 앞서 살펴 본 역외보 조금 규제 법안과 동일하게, ACI 역시 2022. 10월 중 EU 의회 본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회원국들의 회의론에 비추어 볼 때, ACI 규정안이 현재 안 그대로 채택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EU가 역외국으로부터 그 주권 또는 이해관계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법안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sup>70)</sup> 다수의 회원국이 법안을 제3국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INTA 랑게 위원장은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EU가 제3국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 가능한 수단을 갖게 되었다며 역외국의 불공정 관행 저지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한 만큼, 일부 회원국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 방식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sup>71)</sup>

### 3.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 분석

EU는 어떠한 형태로든 ACI를 EU 국내법과 국제법에 적합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즉 ACI에 따른 대응조

치는 위협이 존재하며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해당 국가에 대해서만 도입될 것임이 강조되어 왔으나,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CI는 국제법(international law)의 일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며, 대응 조치들의 범위 또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EU가 취한 대응조치가 WTO 협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만약 ACI에 따른 조치들이 WTO 협정 적용 대상에 관한 조치인 경우, 이를 WTO 분쟁해결협정인 DSU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EU의 국내법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개별적 대응 조치를 취한다면, 그러한 개별적인 조치가 WTO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sup>72)</sup> 또한 그러한 일방적 개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원천이 되는 ACI 규정 그 자체가(per se) WTO협정, 특히 DSU 규정과 합치하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 1) DSU 제23조의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 관련 문제

DSU 제23조는 다자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위반이나 이익침해를 DSU 절차에 의하지 않고 판정하여 개별적으로 보복하는 것

69)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022).

70) Jakob Vela, Giorgio Leali & Stuart Lau, "France eyes quick anti-China action to bail out Lithuania in trade war," Politico, (2022).

71) Anthony Woolich & Eirini Roussou,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a New Anti-Coercion Regulation to Counter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HFW Briefing, (2021), p. 4.

72) 그러한 개별적 조치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WTO의 각 협정상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연히 1차적으로 통상 분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 시점에서 ACI에 따른 모든 위반 조치의 유형을 예상하여 일일이 위반 여부를 논할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ACI에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1) 규정 자체의 WTO협정 위반 여부, (2) 최혜국 대우 위반 문제를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을 금지하고 있다.<sup>73)</sup>

ACI는 일방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규정 그 자체가 WTO협정 DSU 규정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DSU 제23.2(a)조<sup>74)</sup> 4가지 요소에 대한 위반 여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당해 조치는 “그런 상황(in such cases)” 즉, 회원국이 대상협정상의 의무 위반 또는 대상 협정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취해지는 ② “결정(determination)” 조치이어야 하며, ③ 이러한 “결정”은 “협정상의 위반이 발생했다는 취지, 협정상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는 취지 또는 대상 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었다는 취지”이어야 한다. 아울러, ④ 이러한 “결정”은 “DSU 규칙 및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로의 의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DSB가 채택한 패널 또는 상소기구 보고서에 포함된 평결 또는 DSB에 의해 부여된 중

재판정과 일치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한다.

대표적인 일방적 무역제재 조치는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로<sup>75)</sup> 그 역시 WTO 규범에 위반되는 법률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ACI 또한 미 통상법 제301조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어 EC가 제소하여 논쟁을 다루었던 US - Section 301-310 of the Trade Act 1974 분쟁의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CI 검토보고서 초안의 개정안 요약문(recital) 제9항은 EU의 대응 조치는 사실의 검토(examination), 경제적 압력의 결정(determination) 및 제3국과의 해결 방안 논의를 통해 취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76)</sup> 모든 WTO회원국은 DSU 규정 제23.2(a)조에 의거하여, WTO협정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일방당사국에 의한 협정 위반, 이익

73) 다만, 비회원국이나 분쟁 사안이 WTO 대상범위 외의 것은 제외된다.

74) 원문은 다음과 같다. DSU Article 23.2. In such cases, Members shall: (a) not make a determination to the effect that a violation has occurred, that benefits have been nullified or impaired or that the attainment of any objective of the covered agreements has been impeded, except through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is Understanding, and shall make any such determination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contained in the panel or Appellate Body report adopted by the DSB or an arbitration award rendered under this Understanding; (b) follow the procedures set forth in Article 21 to determine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the Member concerned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and (c) follow the procedures set forth in Article 22 to determine the level of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and obtain DSB authorization in accordance with those procedures before suspending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in response to the failure of the Member concerned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within that reasonable period of time.

75) 미 통상법 제301조는 미국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양허 정지 또는 철회, 관세나 기타 수입 제한 부과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 통상법 301조: 무역협정에 의한 미국의 권리, 이익이 침해될 경우 USTR의 대응조치 규정: 302-303조 : 이러한 침해여부에 관한 조사 개시; 304조 : USTR은 WTO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된 후 30일 또는 상기(302-303조) 조사가 개시된 후 18개월 중 빠른 날짜 이전에 미국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결정; 305조 : 306조에 의하여 결정된 조치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시행; 306조 : USTR은 WTO 분쟁에서 패소한 상대국에 의한 분쟁판정의 이행 여부를 “합리적인 기간”이 종료된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 307-310조: 관련 부수규정.

76) 원문은 다음과 같다: Draft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Recital 9. [...] In particular, the Union's response measures should be preceded by an examination of the facts, a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economic coercion, and, wherever possible, efforts to find a solution in cooperation with the third country concerned. [...]



의 무효화 또는 침해 등과 같은 취지의 결정 (determination)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CI는 EU의 대응 조치가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ACI 그 자체가, Argentina - Textiles and Apparel 사건의 패널도 언급하였듯이,<sup>77)</sup> WTO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ACI가 법 조항 자체에서 DSU 분쟁해결절차의 개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DSU의 규칙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치로서 해석될 경우에도 DSU 제23조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US - Section 301-310 of the Trade Act 1974 분쟁에서 통상법 제304조는 DSU 절차의 완료 전 WTO 의무 불일치의 결정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이 WTO 의무와 일치하게 행동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동 법 조항 그 자체를 DSU 제23.2(a)조 위반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패널은 해당 법률 자체는 일응 제23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았다.<sup>78)</sup>

그런데, 미국은 UR협상 결과를 시행하기 위해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행정조치성명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이하 "SAA")에서 일부 약속의 이행 및 적용할 것을 명시하였는데, 패널은 미국이 그 중 하나로 "통상법 제301조에 의하여 미국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결정은 DSB에서 채택되는 패널 또는 상소 보고서에 기초를 둠"이라고

명시한 점과 본 패널에 출석한 미국 대표가 제301조에 의한 USTR의 결정은 패널 또는 상소기구의 평결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SAA의 약속을 재차 확인한 점을 근거로 들어 통상법 제301조가 그 자체로 WTO협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sup>79)</sup> 즉, 동 사건의 패널은 무조건적으로 제301조가 WTO 협정과 일치성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제301조 법률 자체는 DSU 제23조에 위반되지만, 미국의 패널 진술 및 SAA 공식 성명에 따른 약속에 근거하여 그 위반 요소가 제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ACI 또한 EU가 특정 ACI 조치가 WTO 패널 또는 상소기구의 평결에 기초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절차를 준수할 경우에는 ACI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WTO협정 위반임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실제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 2) GATT 제조(최혜국 대우) 위반

GATT 제I조에 의한 최혜국 대우 의무는 양허 여부와 무관한 일종의 절대적인 일반적 의무이다.<sup>80)</sup> ACI에 따라 EU가 특정 WTO 회원국에 대하여 관세양허를 포함한 불리한 무역효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그러한 조치가 상기와 같은 WTO 협의 관련 조항에 해당되거나, DSU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보복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보복조치의 대

77) Panel Report, Argentin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ootwear, textiles, apparel and other items, paras. 6.45-6.47..

78) Panel Report, United States - Section 301-310 of the Trade Act of 1974, paras. 7.59-7.61.

79) Ibid., paras. 7.109-7.114, 7.127-7.130, 7.131.

80)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외는 GATT 제XIX조와 WTO Safeguards 협정에 의한 일시적 조치, 제XX조(일반적 예외)와 제XXI조(안보상의 예외), 그리고 제XXIV조에 의한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를 꼽을 수 있다.

상 국가인 WTO 회원국에 대하여 GATT 제I 조에 의한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의무를 위반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ACI에 의한 보복 조치가 발동되는 경우 그 조치의 내용과 실행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CI는 EU 및 EU회원국의 이익 및 주권적 선택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상대국의 최혜국 대우 위반 주장에 대하여 EU가 GATT 제XXI조에 따른 안보예외 조치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Russia - Traffic in Transit 사건의 패널 판결에<sup>81)</sup> 따라 EU가 ACI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조치가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는 개별 조치에 관한 후속 연구에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4.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현재 EU 의회에서 합의된 규정안은 경제적 압력 조건을 사례별로 판단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EU를 대상으로 'EU가 판단하는' 경제적 압력 조치를 취한 모든 역외국에 동 법안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제재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EU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역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다양한 대응조치를 마련해왔으나 경제적 압력 관련 대응은 이번이 최초인바, 앞으로도

역외국의 경제적 압력을 막기 위한 EU의 노력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현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압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당사국간 협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sup>82)</sup> 하지만, EU에 경제적 압력을 조치를 취한 국가와 거래를 하는 경우 제3국 정부와 연관된 특정 개인 및 단체에도 대응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간접적인 영향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동 법안 시행 이후 EU가 경제적 압력에 대한 대응조치를 실제 어떻게 집행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EU가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역외보조금 규제와 ACI의 발의 배경부터 법안의 세부 내용, 향후 법안 처리 일정, 기존 통상규범과의 합치성, 그리고 우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두루 살펴보았다.

EU는 기존의 다자무역규범에서 규정해온 전통적인 규정에 탈피하여, 기존의 다자규범들 간의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직접적인 시도를 선포하였다. 역외보조금 규제 부문에서는 제3국(특히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투자

81) Panel Report,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DS512), paras. 7.134-7.135.

82)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U 통상위협대응 규정(안) 핵심내용 및 시사점", EU Trade Brief, (2022), p. 5.

(보조금)가 증가하나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점 등을 사유로, EU 역내시장에 경쟁 왜곡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① 기업결합, ② 공공조달, ③ 기타 역내시장의 경쟁 왜곡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ACI 부문에서는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 회원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제3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EU와 EU 회원국들의 이익과 주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EU의 신통상규범들은 우리 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좌시할 수만은 없다.

WTO 다자체제의 약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EU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EU와 같

은 일방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특히, 대(對)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각국의 국내 제재로부터 자유롭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반드시 각 규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고 또는 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조치가 취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수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최종 확정 전 또는 시행 이후 집행위의 행보와 판단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도연, “EU, 역외국 통상위협 대응 규정안 마련,”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Sn=244&pNttSn=192705](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Sn=244&pNttSn=192705) 참조(최종 검색일: 2022. 09. 13).
- 샬리아 해튼,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과감한 투자인가, 고리대금업인가?” 「BBC뉴스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8730108>(최종 검색일: 2022. 9. 28).
- 오세화, “PIIE 세미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 「워싱턴통상정보」, 2021. 10. 22.
- 이천기·강민지·김민주,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환율보조금”,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1-05(2021) pp. 27-75.
- 정누리, “제3국 우회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동향에 관한 소고: 2021년 발의된 유럽연합과 미국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2021), pp. 219-248.
- 최세나, “유럽연합의 신통상정책 공정무역인가? 보호무역인가?”, EU 깊이 있게 알기 시리즈(15).
- 최재덕, “일대일로의 이론과 실제: 중국의 지역패권주의 강화와 일대일로 사업추진에서 발생한 한계점”,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3호(2018), pp. 25-46.
- 최재덕, “중국몽(中國夢) ‘일대일로’, 그 기회와 함정”, 「프레시안」, 2018. 7. 27.
- 최재덕, “중국의 미래전략이 바뀐다 - [기고] 코로나 팬데믹 속 중국의 대응”, 「프레시안」, 2020. 12. 14.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유럽의 회 국제통상위원회, '통상위협 대응조치' 합의...이사회는 합의 난항”, 2022,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areaAcctoCmercInfo/euCmercInfo/euCmercInfoDetail.do?pageIndex=1&Index=1826448&no=1826439&classification=130001&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Keyword=> 참조(최종 검색일: 2022. 9. 13).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U 통상위협대응 규정(안) 핵심내용 및 시사점”, EU Trade Brief, 2022
- Anthony Woolich & Eirini Roussou,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a New Anti-Coercion Regulation to Counter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HFW Briefing, 2021.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776 of 12 June 2020 imposing definitive countervail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woven and/or stitched glass fibre fabric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Egypt and amending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492 imposing definitive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woven and/or stitched glass

fibre fabric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Egypt.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433 of 15 March 2022 imposing definitive countervailing duties on imports of 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originating in India and Indonesia and amending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2012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definitively collecting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originating in India and Indonesia.

Eszter BALÁZS, "New tool to protect internal market against distortive foreign subsidies," 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s, 2022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IMPACT ASSESSMENT Accompanying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2021. 5. 5. SWD(2021) 99 final.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Report," European Commission SWD(2021) 371 final, 2021.

European Commission, "EU strengthens protection against economic coercion,"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2021.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and HR/VP contribution to the European Council: EU-China - A

strategic outlook," 2019. 3. 12.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communication-eu-china-a-strategic-outlook.pdf>(최종 검색일: 2022. 9. 28).

European Commission, "Foreign Subsidies,"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international/foreign-subsidies\\_en](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international/foreign-subsidies_en)(최종 검색일: 2022. 9. 28).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2021. 5. 5. COM(2021) 223 final, 2021/0114 (COD).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Commission proposal for an Anti-Coercion Instrument," European Commission Press Corner, 2021.

European Commission, "Trade Policy Review - 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 EC COM(2021) 66 final, 2021.

European Parliament. Provisional Agreement Resulting from Interinstitutional Negotiations. 2020. 7. 11. [https://www.europarl.europa.eu/meetdocs/2014\\_2019/plmrep/COMMITTEES/INTA/DV/2022/07-13/1260231\\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meetdocs/2014_2019/plmrep/COMMITTEES/INTA/DV/2022/07-13/1260231_EN.pdf)(최종 검색일: 2022. 9. 28).

Jakob Vela, Giorgio Leali & Stuart Lau, "France eyes quick anti-China action to bail out Lithuania in trade war," Politico, 2022.

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0/january/tradoc\\_158567.pdf](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0/january/tradoc_158567.pdf)(최종 검색일: 2022. 9. 28).

Panel Report, Argentin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ootwear, textiles, apparel and other items (DS164).

Panel Report, Brazil – Aircraft (DS46)

Panel Report,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DS512).

Panel Report, United States – Section 301-310 of the Trade Act of 1974 (DS152).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European Commission COM(2021) 775 final, 2021.

White Paper on levelling the playing field as regards foreign subsidies. 2020. 6. 17. COM(2020) 253 final.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system/files/2021-06/foreign\\_subsidies\\_white\\_paper\\_en.pdf](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system/files/2021-06/foreign_subsidies_white_paper_en.pdf)(최종 검색일: 2022. 9. 28).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TO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